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66 호 2016. 10. 13(목)

## 고 시

제2016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1
제2016 - 8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대상지>	3
제2016 - 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제2016 - 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

## 공 고

제2016 - 744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6
제2016 - 748호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 신고사항 공고	7
제2016 - 75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제2016 - 758호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제2016 - 762호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신고 사항 공고	41
제2016 - 778호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 입법예고	42

## 알 림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22호 상주의 53개소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계약체결 공고 ... 50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465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6 - 81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대상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남해군 고시 제2012-59호(2012.7.13)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해제지역

가. 개발행위허가 해제지역 지형도면고시 내역

지역 · 지구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개발행위허가 해제지역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185,477m <sup>2</sup>	

나. 개발행위허가 해제지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2. 해제사유 :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3. 지정일 : 2012. 7. 13.

4. 해제일 : 2016. 10. 13.

5. 열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055-860-3414)

남해군 고시 제2016 - 82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다천천)
2. 성 명 : 정 옥 ○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129-5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231㎡
7. 점용기간 : 2016. 10. 06. ~ 2019.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6 - 8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창선천)
2. 성 명 : 박 재 ○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
4. 점용목적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사용
5. 점용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3-1번지
6. 점용면적 : 670㎡
7. 점용기간 : 2016. 10. 6.~2017. 10. 0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744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손○악	주소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
소하천명		천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557번지(1528번지 인근)		
	면적	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6. 9. 19. ~ 2017. 9. 18.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진입로(7㎡) 및 배수관로(1㎡)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16 - 748호

###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 신고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452호	패류양식 (수하식)	삼동 동천	21,000	2016. 9. 22. 2026. 9. 21. (10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	박○태 외2명 (박○세, 강○옥)	대체개발 (어장이설)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57호	패류양식 (수하식)	홍합	삼동 동천	21,000	2014. 7. 4 2024. 7. 3 (10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	박○태외 2명 (박○세, 강○옥)	대체개발 (어장이설)

남해군 공고 제2016 - 750호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및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3. 관련법규

- 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4조
-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4.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조례·시행규칙 내용 중 조항번호 수정
  - 명칭 수정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장

나. 보건소장 직렬 확대 :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 055-860-3113, 팩스 : 055-860-3737)

- 붙임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을 “보건진료소장” 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제9조” 를 “제11조” 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을 “보건진료소장”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을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장 등) ① 남해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p> <p>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p>	<p>제4조(소장 등) ① _____ 지방 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 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 사무관-----.</p> <p>② _____ 제4조 _____</p> <p>③ _____ 보건진료소장 _____</p>

남해군 공고 제2016 - 750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 정원 조정
- 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 조정
- 다. 감염병 관리인력 보강에 따른 보건소 정원 조정

### 3. 관련근거

- 가.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2016.2.4. 보건복지부) 및 남해군 주민복지실-42084호(2016.6.9.) 「남해군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 보고」
- 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호(2014.12.8.) 및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13804호(2014.12.9.) 「자치단체(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 통보」
- 다. 경상남도 정책기획관-6763호(2016.8.11.)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 통보」



4. 주요내용

가. 총정원 조정 : 569명 → 58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 증12명(사회복지직 11명, 간호직 1명)

구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현행	569	283	13	61	43	25	18	126
개정	581	283	13	62	43	25	20	135
증감	증12	-	-	증1	-	-	증2	증9

다. 보건소장 직렬 확대에 따라 [별표]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5급 “의무” 단수직렬을 “의무·의료기술·보건진료” 복수직렬로 변경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 055-860-3113, 팩스 : 055-860-3737)

- 붙임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9명” 을 “58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6명” 을 “568명” 으로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69명</u>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_____ _____ <u>568명</u> _____ -----.</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56명</u> 2. (생략)</p>	<p>1. ----- : <u>568명</u> 2. (현행과 같음)</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 별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면
					보 건 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581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554						
4급		1	1					
4~5급		3	2		1			
5급		31	11	3	1	4	2	10
6급이하 소계		51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3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음	면	
					보건소	농업기 술센터				
계	합계	581	284	13	62	43	25	19	135	
	일반직	555	281	13	62	20	25	19	135	
5급 합계		1			1					
5급	의무+의료기술+ 보건진료	1			1					
6급 합계		7							7	
6급	행정+사회복지+ 전산	7							7	
7급 합계		8	4					1	3	
7급	행정+사회복지	8	4					1	3	
8급 합계		11	2		3			1	5	
8급	행정+사회복지	8	2					1	5	
8급	보건+간호	3			3					

  

현 행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음	면	
					보건소	농업기 술센터				
계	합계	569	283	13	61	43	25	18	126	
	일반직	543	280	13	61	20	25	18	126	
5급 합계		1			1					
5급	의무	1			1					
6급 합계		4							4	
6급	행정+사회복지+ 전산	4							4	
7급 합계		3	3							
7급	행정+사회복지	3	3							
8급 합계		7	2		2			1	2	
8급	행정+사회복지	5	2					1	2	
8급	보건+간호	2			2					









남해군 공고 제2016 - 750호

##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제명이 주는 의미가 명확하도록 제명 변경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

### 3. 관련근거

- 경상남도 행정과-10811호(2016.7.11.) 「' 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안내」

### 4.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명칭 변경 : 남해읍 사무소 →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 055-860-3113, 팩스 : 055-860-3737)

붙임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를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 표 중 “남해읍 사무소” 를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소 소재지) (생략)			제2조(사무소 소재지) (현행과 같음)		
군청및읍면	소재지	참 고	군청및읍면	소재지	참 고
남해군청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읍 사무소	남해읍 화전로 81		<a href="#">남해읍 행정복지센터</a>	남해읍 화전로 81	
이동면 사무소	이동면 무림로 76		이동면 사무소	이동면 무림로 76	
상주면 사무소	상주면 남해대로 705		상주면 사무소	상주면 남해대로 705	
삼동면 사무소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2		삼동면 사무소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2	
미조면 사무소	미조면 미송로 60		미조면 사무소	미조면 미송로 60	
남면 사무소	남면 남서대로 778		남면 사무소	남면 남서대로 778	
서면 사무소	서면 스포츠로 676		서면 사무소	서면 스포츠로 676	
고현면 사무소	고현면 탑동로 42		고현면 사무소	고현면 탑동로 42	
설천면 사무소	설천면 설천로 695		설천면 사무소	설천면 설천로 695	
창선면 사무소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		창선면 사무소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	

남해군 공고 제2016 - 758호

###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나.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 (안 제26조)
  -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추가 (안 제31조)
  -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삭제 (안 제34조제2항·제4항, 제38조제4항·제5항·제6항, 제38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제60조의2)
-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대한 대부료 요율 추가 (안 제27조제6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대부료 경감사항 추가 (안 제31조제5항)

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 사항 추가 (안 제37조제10호)

라. 상위 법령 등 규정 사항 개정 (안 제10조, 제21조, 제2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남해군수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홈페이지로 의견제출 시 별지서식1 작성 불필요)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면리 남해군청) 남해군(재무과장)
- (2) 팩 스 : 055-860-3705
- (3) E-mail : kdj5727@korea.kr
- (4)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 : 1

##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을 “매각대금의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법 제27조제3항” 을 “법제27조제5항” 으로, 같은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 을 “법 제27조제6항” 으로, 같은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 을 “법 제27조제6항” 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정하는 제6항을 신설한다.

제29조제1항 중 “채취물” 을 “원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제29조제3항 중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을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물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수 있다.

제34조의 조문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을 “대부료 등의 납기”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내용 및 같은조 제4항을 삭제 한다.

제37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제38조제1항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⑥ (생 략)</p> <p><b>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b>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제25호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하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li> <li>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li> <li>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li> <li>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li> <li>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lt;개정 2015.12.4.&gt;</li> <li>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li> </ol>	<p>⑥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b>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b></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li> <li>3. ~ 6. (생 략)</li> </ol> <p>⑤ (생 략)</p> <p>&lt;신 설&gt;</p>	<p><b>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_____ _____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lt;삭 제&gt; _____ _____</li> <li>3. ~ 6. (현행과 같음)</li> </ol>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p>

<p><b>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b>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p><b>②</b> 제1항의 채취물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다.</p> <p><b>③</b>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b>④ ~ ⑤</b> (생 략)</p>	<p>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b>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b> ----- ----- ----- ----- ----- ----- ----- ----- ----- ----- ----- -----</p> <p><b>②</b>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 ----- -----</p> <p><b>③</b> -----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장하고 ----- -----</p> <p><b>④ ~ ⑤</b> (현행과 같음)</p>
<p><b>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b>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b>②</b>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p>	<p><b>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b>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b>②</b>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p> <p>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p>

<p>③ 영 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대부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생 략) &lt;신 설&gt;</p>	<p>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p> <p>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에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p>
<p><b>제34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b>① (생 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p>	<p><b>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b>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lt;삭 제&gt;</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p><b>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불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 략)</p>	<p><b>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 _____ _____ _____ _____ -. 1.~9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b>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b></p> <p>① (생략)</p> <p>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b>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b>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b></p> <p>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교환차금”으로 본다.</p> <p>② 제1항,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p>	<p><b>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b></p> <p>① _____</p> <p>_____</p> <p>_____ 제38조제1항제2호 _____</p> <p>_____</p> <p>_____</p> <p>----.</p> <p>&lt;삭 제&gt;</p>

# 남 해 군 공 보

(40) 제 566 호

2016년 10월 13일

<p><u>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u></p>	
<p><b>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b>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이 경우 남은 금액은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u></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b>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b>-----</p> <p>-----&lt;삭제&gt;</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b> 영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p>	<p>&lt;삭제&gt;</p>

남해군 공고 제2016 - 762호

##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신고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453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서면 장항	12,500	2016. 10. 5. 2026. 10. 4. (10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	이○택 외3명 (이○명, 이○수, 이○호)	대체개발 (어장이설)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39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해면 어류	서면 장항	12,500	2010. 7. 3 2020. 7. 2 (10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	이○택 외3명 (이○명, 이○수, 이○호)	대체개발 (어장이설)

남해군 공고 제2016 - 778호

##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 남 해 군 수

#### 1. 제정이유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주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완화하고자 함
- 폭 10미터 이상 개설 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종단경사 적용가능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연락처 : 전화055-860-3315, 팩스055-860-3708, e-mail : [sindp@korea.kr](mailto:sindp@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평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차선 및 차도) ①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 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차선수
면도	2
리도	1
농도	1

②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평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평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

도의 차선향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차선향(미터)
리도	5.0
농도	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길어깨)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구분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0.5
리도	0.75	0.5
농도	0.5	-

③ 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⑤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8., 2010.10.14.>

⑦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 ①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 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120	3	4						
110	3	5						
100	3	5	3	6				
90	4	6	4	6				
80	4	6	4	7	6	9		
70			5	7	7	10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비고)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알 림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22호

상주외 53개소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계약체결 공고

하수도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항에 따라 우리군 상주하수처리장 외 53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남 해 군 수

1. 관리대행의 목적

하수도법 제 19조의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대하여 우리군 상주외 53개소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남해군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함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시 설 명	처리용량 (톤/일)	준공년도	주요처리공법	비 고
54개소	7,004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900	2006	PSBR+ESSA	TMS 포함
이동 하수종말처리장	600	2008	PSBR	
미조 하수종말처리장	650	2008	PSBR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 51개소	4,854	-	고도처리 등	

3. 관리대행 기간 : 2016.10.01 ~ 2019. 09. 30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대표사 : (주)티에스케이워터 대표 김○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동사 : (주)우진 대표 신○섭 경남 진주시 모덕로 \*\*\*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 군비(연간 1,598백만원)